

관계공무원 등 출입·조치사항기록부[illegible]

비고 : 위 기록부는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4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영업소에 출입하는 관계공무원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직원이 작성하여 서명·날인한 후 해당 영업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